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관람료 무료화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박물관 관련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 보급을 통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 나. 국내·외 변화된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롭고 다양화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이용」을 「제2장 관람」과 「제3장 대관」으로 구분함(안 제5조 ~ 제11조)
- 나. 박물관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다. 박물관 시설 대관 기준 및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고 대관 시설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추가함(안 제11조)
- 라. 효율적인 유물수집과 내실있는 유물평가를 위하여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를 신설하고 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함. (안 제5장 제28조 ~ 제31조)
- 마. 자원봉사자(전시 해설사 포함)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 ~ 제39조)
- 바. 별표 1의 시설사용료(제15조 관련)를 개정함(안 별표 1)
- 사. 별표 2의 박물관 자료 이용료(안 제 37조 관련)를 현실화 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을 “관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하는 경우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 제목 “(무료관람)”을 “(자체기획전 무료관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료”를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세 이하 또는”을

“취학전 아동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제7조제1항 중 “발행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박물관 :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2. 송암미술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3. 검단선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4. 한국이민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5조제1항중 “별표 2와” 를 “별표 1과” 로 한다.

제22조 앞의 “제3장 운영위원회” 를 “제4장 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7조” 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2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7조 다음에 “제4장 심의회” 를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박물관유물의 정의 등) ① 박물관유물(이하 “유물”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 유물의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및 기증 등 수집유물 등의 선정
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
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0조(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① 구입 등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1조 앞의 “제5장 유물 수집”을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자료구입)”을 “(유물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장”을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박물관”을 “실무위원회”로, “심의회 위원들의”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료”를 “유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자료기증)”을 “(유물기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를”을 “유물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자료기탁)” 을 “(유물기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를” 을 “유물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료” 를 “유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는” 을 “유물은” 으로, “자료와” 를 “유물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자료” 를 각각 “유물” 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자료관리)” 를 “(유물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 를 “유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는 일반자료와” 를 “유물은 일반유물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료” 를 각각 “유물” 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 를 “안전관리” 로, “자료를” 을 “유물을” 로 하고,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을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는” 을 “유물은” 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이용 및 대여” 를 “박물관 운영 등” 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자료이용과 대여)” 를 “(유물이용과 대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 를 “유물” 로, “박물관자료” 를 “유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 를 각각 “유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료를” 을 “유물을” 로, “별표 1” 을 “별표 2”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술조사” 를 “학술목적”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고 제7장 보칙 앞에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전시 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15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50,000	
	영상실(석남홀)	4시간	40,000	
	우현마당	1일	30,000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 당	4시간	20,000	
	정 원	1일	35,000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20,000	
	전시용 슬로프	1일	1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당	4시간	30,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야간(18시 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

박물관 유물 이용료 (제37조 관련)

구 분	수 량	이 용 료
사 진 촬 영	1 점	30,000원
탁 본	1 점	30,000원
모 조(실 측)	1 점	30,000원
모 사(실 측)	1 점	30,000원
사진원판사용	1 점	디지털 10,000원 스캔(허가) 5,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u>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u>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u>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u>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u> 제5조(관람료) ① 「<u>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 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u>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u> 제2조(적용의 범위) ----- ----- <u>인천광역시립박물관</u>----- ----- -- <u>제2장 관람</u> 제5조(관람료) ① <u>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u> 1. <u>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와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u> 2. <u>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 (이하 “대관 전시”라 한다)</u>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u>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u>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생략)
 2.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 9. (생략)
- <신 설>

10. (생략)

제7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전시실 관람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말 것
2. 허가 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지 말 것.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
4. 박물관 안에서는 흡연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1. (현행과 같음)
2. 취학전 아동과 -----
3. ~ 9. (현행과 같음)
10.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7조(관람권) ① -----

발행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

<신 설>

제11조(사용의 허가) ① 시설(기획전시실·영상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

다.

제3장 대관

제11조(대관의 허가범위)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박물관 :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2. 송암미술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3. 검단선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4. 한국이민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5조(사용료) ① -----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22조(박물관운영위원회) 법 제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 구성)

- ① ~ ⑤ (생략)
- ⑥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박물관 자료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4장 심의회

제28조(심의회 구성) ① 제23조제6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3명 이상으로 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박물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 별표 1과 같다.

제4장 -----

제22조(박물관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제23조(위원회 구성)

-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삭제>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제28조(박물관유물의 정의 등) ① 박물관유물(이하 “유물”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 ② 유물의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물수집실무

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액
3.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회의 등) ① 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

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및 기증 등 수집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0조(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① 구입 등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5장 유물수집

제31조(박물관자료의 정의 등) ①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 자료의 고증·감정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소집한다.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삭 제>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료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자료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③ 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자료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후단신설>

②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

제32조(유물구입) ① -----

----- 소장-----

② ---- 실무위원회-----

-----심의회의
의 -----

③ -----

-----시장-----

④ 유물-----

제33조(유물기증) ① -----

----- 유물을 ----

-----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자료기탁) ① 시장은 전시
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
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
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탁 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
다.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
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자료
로 처리한다.

제35조(자료관리) ① 시장은 소장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평
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
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유물기탁) ① -----
----- 유물을

② 유물-----

③ ----- 유물은 -----
----- 유물과 -----

④ -----

----- 유물-----

⑤ -----

----- 유물

제35조(유물관리) ① -----

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장고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장 이용 및 대여

제37조(자료이용과 대여) ① 자료

유물에 -----

② ----- 유물
은 일반유물과 -----

③ 유물-----

④ ----- 유물-----

제36조(수장고관리) ① -----
--- 유물-----
----- 유물을 -----

----- 유물을 -----

② ----- 유물
은 -----

제6장 박물관 운영 등

제37조(유물이용과 대여) ① 유물

의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자료에 대해 모사·사진촬영·복제·복사·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라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유물

② -----

유물-----

----- 유물에-----

③ ----- 유물을 --

----- 별표 2-----

----- 학술목적-----

④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전시해설사

<u><신 설></u> <u>제38조</u> (생략) <u>제39조</u> (생략)	<u>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39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u> <u>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u> <u>②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u> <u>제40조</u> (현행 제38조와 같음) <u>제41조</u> (현행 제39조와 같음)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7조(운영 위원회) - 제12조(설립과 운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관련 법규 정비 대상	
관련 자료	

관계법령 발체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관람료) :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연간 관람료세입 감소
(2012년 박물관 관람료 : 8,5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박물관 무료 관람에 따른 관람료 수입(세입) 감소)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

※ 2012년 말 기준 관람료 수입은 8,500천원임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신 현 환 의원